

2006-03 | 책임연구보고서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윤 황

2006-03

연구보고서(장편)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윤황(범죄대책실 연구관)

2006년 12월 20일

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4
제2장 경찰수사와 인권보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경찰수사	5
1. 수사의 개념	5
2. 수사의 목적	5
3. 수사의 특성	6
4. 수사의 대상	7
제2절 인권	9
1. 인권의 개념	9
2. 인권의 유형	10
3. 인권의 발전과정	12
4. 인권의 내용 및 분류	13
5.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	13
제3절 경찰수사와 인권과의 관계	15
1. 경찰업무와 인권	15
2. 경찰과 인권의 상관성	16
3. 한국경찰과 인권문제	17
4. 한국경찰수사와 인권침해문제	18
제3장 경찰수사과정상 인권침해의 실태와 문제점	21
제1절 인권침해 실태	21

1. 피의자의 권리 불고지	22
2. 체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22
3. 영장없는 압수수색	22
4.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수사	22
5. 총기 등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23
6.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23
7. 고문	23
8.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23
9.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24
10. 불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 미흡	24
제2절 문제점	25
1. 체포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고지	25
2. 영장없는 체포	25
3. 고문 등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26
4. 불공정한 수사과 미흡한 인권보호	27
5.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27
6. 피의사실 유포	28
제4장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향상방안	28
제1절 경찰청의 ‘인권경찰상’ 구현 추진방안	28
1.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8
2. 인권보호 종합추진 계획(1004 PROJECT)	32
3. 수요자 중심의 친인권적 고품격 수사서비스 제공	45
제2절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방안	47
1. 범절차의 준법화	47
2. 인권교육의 철저화	48
3. 수사환경과 수사관행의 개선화	50
4.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확대화	51

제3절 경찰수사상 인권보장의 전문화 강화방안 52

- 1.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체계 확립(수사인력의 간부화) 52
- 2. 사법경찰관의 전문성 확보(수사경과제의 시행) 53
- 3. 수사기법의 과학화 54
- 4. 특수수사기능의 강화 54

제5장 결론 55

<참고문헌> 58

<표·그림 목차>

<표 차례>

<표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현황(2001. 11 ~ 2006. 10)	19
<표 2> 인권상담전화 접수 유형(2005년)	30
<표 3> 화상대질 조사실의 시범운영대상	42
<표 4>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43
<표 5> 광역유치장 시범운영 경찰서 현황	45
<표 6> 구속영장 신청 미발부 현황('01~'05년)	46

<그림 차례>

<그림 1> 상담 접수·처리 절차도	30
<그림 2> 인권보장 구현의 4대실천과제	32
<그림 3> 임의동행 동의서	33
<그림 4> 영장심의·구속영장신청 적부심사서	34
<그림 5> 이동식 피해자조사실의 운영체계	38
<그림 6> 이동식 피해자조사실 내부모습	39
<그림 7>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의 조직 구성도	40
<그림 8> 수사단계별 피해자지원 체계도	40
<그림 9> 화상대질 조사실 내부 구조도	42
<그림 10> 구속영장 신청 미발부 현황(2001~2005년)	46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각종 자료들을 섭렵하는 ‘문헌연구법’(documentary method, document studies)을 취하고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된다.

첫째, 경찰수사와 인권보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수사의 개념·목적·특성·대상, 인권의 개념·유형·발전과정·내용 및 분류·대한민국헌법상 기본적 인권보장에 관한 본질을 규명한 후 경찰업무와 인권, 경찰과 인권의 상관성, 한국경찰과 인권문제, 한국경찰수사와 인권침해문제와의 관계를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둘째, 경찰수사과정상 인권침해의 실태와 문제점에서 인권침해의 실태는 ① 피의자의 권리 불고지, ② 체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③ 영장없는 압수수색, ④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수사, ⑤ 총기 등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⑥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⑦ 고문, ⑧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⑨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⑩ 불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 미흡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문제점은 ① 체포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고지, ② 영장없는 체포, ③ 고문 등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④ 불공정한 수사와 미흡한 인권보호, 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⑥ 피의사실 유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향상방안에서 경찰청의 ‘인권경찰상’(人權警察像) 구현 추진방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①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②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1004 PROJECT), ③ 수요자 중심의 친인권적 고품격 수사서비스 제공 등 크게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고찰하였고, 이에 토대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방안은 ① 법절차의 준법화, ② 인권교육의 철저화, ③ 수사환경과 수사관행의 개선화, ④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확대화 등 4가지 차원으로 제시되었고, 경찰수사상 인권보장의 전문성 강화방안은 ①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체계 확립(수사인력의 간부화), ② 사법경찰관의 전문성 확보(수사경과제의 시행), ③ 수사기법의 과학화, ④ 특수수사기능의 강화 등 4가지 차원으로 제안되었다.

끝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경찰은 범죄수사조직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그 조직의 존립기반자로서 선진민주인권경찰의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경찰조직을 수사상 최선봉·최고봉의 인권수호조직이 되도록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주제어: 경찰, 수사, 인권, 피의자, 체포, 영장, 사회적 소수자, 변호인, 고문, 불법행위, 피의사실, 인권보장, 경찰청, 인권교육, 수사환경, 수사관, 수사과정, 수사체계, 수사기법 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2006년도 경찰 61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찰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역할을 해 왔으며 그 만큼의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 경찰은 변영과 발전의 이면에 있는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며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위상을 갖추도록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우리 경찰의 자부심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성과를 창출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찰은 창설 61주년을 맞아 추진한 기념사업도 지난 61년간 고된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 경찰의 저력을 재확인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다른 61년을 준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동안 우리 경찰이 추진해 온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혁신 과제와 행사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인권경찰’의 구현을 화두로 이끌어 온 2005년의 많은 과업들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경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경찰관들에게 ‘인권수호’에 대한 공감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즉 2005년도 우리 경찰은 기념사업의 핵심과제를 인권으로 정하고 ‘인권경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보호센터와 인권수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인권보호 종합계획인 「1004 프로젝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인권경찰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특히 2005년도 경찰 60주년 기념사업의 3대 주제인 ‘성찰과 계승’, ‘화합과 참여’, ‘도전과 미래’ 분야별 사업이 ‘인권’이라는 핵심과제와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먼저 ‘성찰과 계승’ 분야 사업을 통해 과거 경찰활동의 잘못을 스스로 성찰하고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경찰청장이 치안총수로서는 처음으로 제주 4·3 평화공원과 4·19, 5·18 묘역을 참배하였으며, 특히 과거 반(反)인권의 상징이던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가칭)’으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경찰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화합과 참여’ 분야 사업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와 인류애 실천을 위한 헌혈 및 각막·장기기증 사업 등을 통해 인권존중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경찰 스스로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전과 미래’ 분야 사업에서는 국민에게 공감 받는 수요자 중심의 치안행정으로의 전환과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뉴얼 관리체계 개선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¹⁾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과 관련된 인권침해 결정문과 결정례집을 보면 아직도 우리 경찰의 인권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과제를 제기해주고 있다. 예컨대 과도한 증거자료 압수에 의한 인권침해,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강제연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부당 임의동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의사실공표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종교행사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의료조치미흡과 관련한 인권침해, 가족 통지 거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구속영장 발부 사실 미통보에 의한 인권침해, 자백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등²⁾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심리적 정황을 무시하고 무감각한 수사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는 것과 같은 협박·공갈행위가 있을 때에도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즉각적인 위기개입에 소홀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 즉 경찰의 위기개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³⁾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11월 과격시위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동년 12월 26일 ‘경찰의 폭행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검찰수사를 의뢰키로 한 것⁴⁾은 경찰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권경찰’을 표방한 우리 경찰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7월 16일 경북 포항시 형산로터리 노조집회와 관련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 과잉진압 행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중근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잉진압 등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 서울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던 것⁵⁾은 2006년도 경찰 61주년을 맞이한 우리 경찰의 선진민주인권경찰 확립이라는 노력의 공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러한 상처와 허공보다 더 큰 문제는 2005년 11월 과격시위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전용철·홍덕표 농민이 사망한 서울 여의도농민대회에서 쇠파이프 2,000여개가 등장한 시위였다⁶⁾는 점, 과격시위로 인해 2002년 287명이었던 경찰 부상자가 2005년 89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그 수가 2006년 10월말까지 711명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1%가 증가했다⁷⁾는 점에 도사리고 있다. 이 점들은 갈수록 시위가 과격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경찰

1) 경찰청, 『2006 경찰백서』(2006), p. 72.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결정례집자료」, <http://www.humanrights.go.kr>(검색일자: 2006. 12. 18).

3) 김재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위기개입전문가의 양성,” 한국경찰학회, 『경찰활동과 인권』(제12회 정기학술세미나자료집, 2006.6.17), pp. 55-56.

4) 『세계일보』, 2005년 12월 28일자.

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검색일자: 2006. 11. 27).

6) 『문화일보』, 2006년 12월 13일자.

7) 『문화일보』, 2006년 12월 14일자.

의 공권력이 갈수록 도전과 위기를 심하게 받고 있음을 뜻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경찰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법집행과 질서유지,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책무들 간에 충돌로 인해 심한 직업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⁸⁾ 이 문제는 곧 지난 61년간 우리 경찰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만한 조직으로 발전해 왔지만, 세계 최고의 선진민주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늠해 보고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경찰이 앞으로 더 많은 인권경찰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경찰의 기본적인 활동영역은 법집행과 질서유지, 그리고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인권과의 관계에서 경찰은 항상 인권침해와 인권보장의 주체가 되어 왔다. 특히 인권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은 수사경찰이 형사피의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권보장의 주체로서 경찰의 인식을 적게 갖고 있다.

인권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국가 또는 통치권에 의거하여 고문 등을 받지 않을 권리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소극적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개념과 적극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 받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장 또는 인권보호의 개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활동에 있어서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라 명확하면서도 정당한 법적 근거 하에서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하며, 그 범위와 한계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 공정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공권력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절차의 적정절차의 공정성은 인권보호·인권보장적 원리인 동시에 공권력을 실현·제한하는 원리이다. 즉 적법절차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이면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오늘날 공권력 행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적법절차의 강조는 행정경찰활동보다는 직접적으로 인신구속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사법경찰활동, 즉 경찰수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요구된 것이다. 이는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 이르기까지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또는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가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발전하도록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인권침해의 주체로서의 일반적 지위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경찰 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의 작용에서도 인권 개념이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활동 이외에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와 심지어 치안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행정경찰활동으로 인권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행정경찰활동은 직접적인 인권침해의 수단이 사법경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행정경찰활동의

8) Nigel Fielding, "The Organizational and Occupational Troubles of Community Police," *Policing and Society* 4(1994, 4), pp. 305-306.

영역에서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⁹⁾ 이런 문제인식 하에 본 보고서는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인권보장에 분석 초점을 두고자 시도하였다.

제2절 연구의 방법

경찰수사와 관련된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된 것은 사실상 2001년 11월 국민의 기본 인권 보호를 규정한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창립이후부터 일이다. 국가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도부터 인권상황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 경찰수사와 관련된 인권상황의 실태조사로는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2),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2003) 등이 대표적이다. 이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보고서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조사연구방법’(특히 설문지조사방법과 방문조사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경찰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각종 선행연구결과물들을 분석하는 한편,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찰백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들을 섭렵하는 ‘문헌연구법’(documentary method, document studies)¹⁰⁾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사회조사연구방법론에서의 문헌연구법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헌연구법은 이른바 도서관내 연구(library research) 또는 문헌검토(review of literature)를 포함하여 자료수집과 분석의 한 방법을 통칭하고 있다.

이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이 경찰수사과정상 인권침해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분석한 후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2차 자료를 활용한 문헌조사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민주인권경찰의 모범적 모델을 충분히 제안·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진민주인권경찰의 수사과정과 관련된 인권문제의 자료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특징을 규명하여 우리 경찰의 인권보장 확보에도 재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선행연구결과물들을 비롯해 서적, 학술논문, 언론보도매체, 인터넷사이트 자료 등이 총체적 수집·분석되고 있다.

9) 조현빈, “외근경찰의 적극적 인권보호,” 한국경찰학회, 『경찰활동과 인권』, 앞의 책, pp. 79-80.

10) 이만갑·한완상·김경동, 『사회조사방법론』(서울: 한국학습교재사, 1982), pp. 194-210; 김광웅 외, 『사회과학방법론』(서울: 박영사, 1983), pp. 223-234; 김경동·이은주, 『사회조사연구방법』(서울: 박영사, 1986), pp. 307-308, pp. 319-334.

제2장 경찰수사와 인권보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경찰수사

1. 수사의 개념

일반적으로 수사(搜查)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 활동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하며, 이런 절차를 포괄하여 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일반적 의미의 수사개념은 형사소송법 195조¹¹⁾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통설적으로 인정되는 개념규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의 유무’에 대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혐의유무에 대한 조사 단계가 ‘내사’이고, 이러한 내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범죄정보, 진정, 투서 등의 ‘수서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의미의 수사실행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내사’나 ‘수사단서 수집’ 등도 ‘적극적 의미’의 수사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¹²⁾

그러나 ‘범죄수사’의 개념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 ① 일반경찰상의 행위: 범죄수사는 이미 발생된 범죄해결(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사전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주임무로 하는 일반(예방)경찰상의 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행정기관의 조사행위는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행위이므로 범죄수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 ③ 공소제기·재판 등의 행위: 범죄수사도 형사소송절차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나, 순수한 소송절차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2. 수사의 목적

일반적으로 수사의 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기소·불기소의 결정, 공소의 제기·유지, 유죄판결, 형사소송법의 목적 실현 등이 내포되어 있다.¹³⁾

11)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2) 박경식, 『경찰수사론』(용인: 경찰대학, 1999), p. 3.

13) 위의 책, p. 4.

- ①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범죄수사의 제1차적 목적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범죄에 관한 주관적 혐의점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범인 및 범죄사실에 관한 진위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 혐의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 ② 기소·불기소의 결정: 수사를 통하여 파악된 진상을 토대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함. 기소·불기소의 결정에는 범죄의 사실적 내용 뿐만 아니라 법률적 내용,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및 소송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③ 공소의 제기·유지: 전항의 단계에 기소기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된 범인과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되고 수행되며 필요시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추가수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 ④ 유죄판결: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당해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함에 있다.
- ⑤ 형사소송법의 목적 실현: 형사소송법의 절차면에 관한 목적인 공공복리의 유지와 기본적 인권보장, 실체면에 관한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는 형사절차의 일환인 범죄수사에 관하여도 그대로 타당하다.

3. 수사의 특성

수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사실의 진상을 탐지(探知)하는 활동, 형사절차의 일환(一環), 심증(心證)형성을 지향하는 활동(下降過程),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上昇過程) 등¹⁴⁾에서 찾을 수 있다.

- ① 사실의 진상을 탐지(探知)하는 활동: 범죄수사는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고 그 ‘사실에 적용’할 형벌 법령을 규명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수사관이 신이 아닌 이상 과거의 사실에 대한 완전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진상’이란 ‘진실’에 대한 고도의 유사개념으로서 누구에게도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수궁할 정도의 것을 말하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② 형사절차의 일환(一環): 범죄수사는 직접적으로 공소의 제기·수행을 위한 준비활동인 동시에 국가가 행하는 형벌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다. 그리고 공소제기의 준비뿐만 아니라 공소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범죄수사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수사활동은 공소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소제기 후에도 행하여지는 것이다.
- ③ 심증(心證)형성을 지향하는 활동(下降過程): 범죄수사는 사실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형사절차에 올려놓은 활동이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사관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확신있는 판단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14) 위의 책, pp. 5-7.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로서 수사관이 도달한 종국적 판단이 법관의 심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수사는 수사관이 자신의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上昇過程): 수사관이 수사를 행하여 확신있는 판단에 도달했을 경우, 즉 수사관 자신이 심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것을 형사절차에 올려놓기 위하여 심증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획득된 증거에 의해 수사관의 그러한 심증이 증명될 때 검사에게 영향을 미쳐 공소제기가 행해지고 다시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쳐 유죄판결이 행해지는 것이다. 범죄수사는 대체로 하강과정을 거쳐 상승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이 순서이나 이러한 순서는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와 같이 범죄사실의 진상이 처음부터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관 자신의 진상파악을 위한 별도의 활동을 필요로 함이 없어 상승과정의 활동만이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전개하는 이유는 수사관이 자신의 심증을 얻기까지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증거’는 필요가 없고, 다만 수사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추리’를 하여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강과정에서의 수사가 수사관의 자유로운 추리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승과정의 수사가 성공되지 못한다면 설사 범인을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유죄의 판결을 바랄 수는 없게 된다. 즉 수사관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4. 수사의 대상

수사의 대상은 범죄수사로써 무엇을 탐색하고 명확하게 할 것인가, 즉 수사의 실체면은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실적 측면은 범죄행위의 유무에 따르는 범죄의 사실적 내용을 말하고, 법률적 측면은 범죄행위가 형벌규정에 비추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여부를 규명하는 범죄의 법률적 내용을 말한다. 이의 두 측면을 명백히 하는 것이 수사의 실체면을 비로소 형성시키는 것이다.¹⁵⁾

가. 수사의 사실적 내용

범죄가 발생하고 또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사는 무엇보다도 그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범인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언제나 과거에 행하여진 것으로 수사에 있어서 범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떠한 범행이 있었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사관

15) 박경식, 『경찰수사론』(1999), pp. 7-11.

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그러한 “범인과 범죄사실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의 실체측면에서는 이러한 범죄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내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재현할 것인가를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범행을 재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범인이 현재 행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촬영’하여 ‘영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범행을 촬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수사관들이 범행을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범행에 의해서 남겨진 극히 일부분의 결과(범행흔적)에 불과한 것으로 수사관들은 그러한 일부분의 사실을 수집하고 그것에 의해서 범행전체를 재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영화적 수법에 의한 재현”에 대한 “회화적 수법에 의한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과거의 범행을 재현함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수사요소의 충족: 수사요소는 범죄재현의 요소,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요증사실’(要證事實)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정’에는 범행이 재현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반드시 구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 수사의 요소는 ‘4하원칙¹⁶⁾, 6하원칙¹⁷⁾, 8하원칙¹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통 수사에서는 ‘6하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수사의 요소를 구비하자면 ‘8하원칙’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행위의 필연성: 범행이 관념적으로 재현되려면 수사요소를 구비함과 동시에 그 요소들이 생생하게 현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마치 얼굴이 그 사람의 특성인 것처럼.

③ 사건의 형태성(=사건이 전체적으로 집약되는 것): 수사관들은 범행의 전부에 걸쳐서 완전한 자료(증거)를 획득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일부의 자료에 의하여 전체의 사건을 묘사해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수집된 자료가 질서있게 정리되어 결국, 사건의 형태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 수사의 법률적 내용

범죄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로 될 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범죄가 되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떠한 범죄가 되는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195조는 법률적인 평가 이전의 주관적인 혐의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단계에서 범인의 행위사실을 포착하는 데는 그 사실의 여부 및 진위를 검토하는 동시에 언제나 그러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어

16) 4하원칙= 누가(주체), 언제(일시), 어디서(장소), 무엇을(행위).

17) 6하원칙= 누가(주체), 언제(일시), 어디서(장소), 왜(동기), 무엇을(행위), 어떻게(수단방법).

18) 8하원칙= 누가(주체), 언제(일시), 어디서(장소), 누구와(공범), 왜(동기), 누구에게(객체), 어떻게 해서(수단방법), 어떻게 되었나(결과).

떠한 요건에 들어맞는가를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사의 법률적 내용이란 이와 같은 범죄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내용은 형벌법령의 연구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는 것인 바, 수사관은 그러한 형벌법령에 정해있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범죄라는 것은 형벌법령에 열거된 위법, 유책한 행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되는가의 여부는 다음과 4가지를 검토함으로써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 ① 형벌법령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행위)인가?
- ② 위법성이 있는 행위인가?
- ③ 책임성이 있는 행위인가?
- ④ 가벌성이 있는 행위인가?

제2절 인권

1. 인권의 개념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일반적인 견해로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 속에는 서로 다른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등 구체적 상황에서는 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18세기 서구에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 법적 권리를 인권으로 생각하던 경향에서 출발한 인권의 의미는 정보통신이 발달한 20세기말부터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사진 등 과거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인권의 개념과 그 보호 범위 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해 왔다. 하지만 어떠한 시대, 어느 장소에서건 변하지 않는 것은 성별·인종·신체적 특징 등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부여되며 함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¹⁹⁾

문제는 다수 혹은 전체를 위한 소수 혹은 개인의 희생, 또는 더 큰 인권을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인가 등 현실에서 발생하는 판단하기 어려운 갈등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인권이 먼저냐 국권(國權)²⁰⁾이 먼저냐라는 논란은

19)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연구보고서, 2006-01), p. 1.

20) 국권이란 국가의 권리라고 풀어 쓸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그 국내문제에 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매우 오래된 논쟁거리면서도 아직도 명백한 답을 찾기 어려운 주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37조에서 인권의 절대성과 함께 공공의 이익이나 다른 인권의 보호를 위해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인권의 본질이 아닌 일부에 한해 그 침해가 허용된다는 예외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인권과 국권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무엇인지를 함의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항에서도 인권을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²¹⁾

물론 국제인권법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인권의 국제적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한 비엔나 인권선언 및 실천계획 제5항은 모든 인권의 보편성을 전제로 하여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반드시 고려하면서도, 각국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념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위의 비엔나 인권선언 및 실천계획 제5조는 동시에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반드시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권을 국제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장되는 인권에 관한 인권법은 광의로 해석할 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외에 인권에 관한 법률,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인권에 관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인권에 관한 국제법규에 관한 것을 포함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고,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즉 단순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 것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인권의 유형

보통 인권을 영어로 사용할 때에는 복수형인 ‘human rights’라고 쓴다. 이는 인권

‘주권원칙’과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내정불간섭원칙’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즉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근대국민국가는 국내문제에 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주권원칙), 그리고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불개입원칙)는 두 원칙이 확립되었음. 이것이 바로 국권의 내용임. 그러나 인권은 이러한 국권의 개념에 의문을 던지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경찰과 인권』 (2002.10), p. 3.

21)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 (2006-01), pp. 1-2.

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인권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분류 방식이 다르지만, 보통 시민적·정치적 권리, 법적·절차적·규범적 권리, 시민적·정치적·법적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사람 개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다루는 것으로서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권리유형이다. 이 권리는 18세기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가장 먼저 국제법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권리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참정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법적·절차적·규범적 권리는 모든 인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의 지배에 의한 법치(法治)를 뜻한다. 따라서 법적 권리를 정치적, 규범적 권리라고도 한다. 이 권리에는 법 앞의 평등, 유죄판결전까지 무죄추정받을 권리, 공정한 사법부, 공정한 재판, 인신보호, 사생활 보호, 소급입법금지, 구금자 처우 등이 있다. 그 밖에 고문 금지 또는 사형반대 역시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권리이다. 특히 법적 권리는 경찰과 검찰 등 법집행공직자들과 관계가 깊은 권리이기도 하다. 이 권리는 여러 면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데 묶어 시민적·정치적·법적권리라고도 한다.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권리는 밥을 먹고, 살아갈 집이 있고, 가정을 꾸리고, 건강을 지키고,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교육을 받고, 예술과 과학의 업적을 인정받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강조되며, 일정한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 실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적·정치적·법적 권리와 구분된다. 그러나 시민적·정치적·법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둘다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성을 가진다.

이런 유형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non-discriminatory rights)로서 독립된 영역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원칙을 강조한다. 즉 국적,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사상, 신분, 성격지향, 출신지역, 장애, 나이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시민적 권리, 법적 권리, 경제적 권리 등 모든 권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인이 아닌 집단의 권리, 즉 소수자, 난민, 이주노동자, 국민의 자기 결정권 등을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s)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지만 제3세계 민중의 발전권과 토착원주민의 권리 등과 같은 ‘선언적 권리’(declaratory rights)가 있다.²²⁾

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경찰과 인권』(2002.10), pp. 5-7.

3. 인권의 발전과정

봉건제 말기에 시민계급은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 권력에의 예속을 강요당했으므로, 시민혁명을 일으켜 절대주의 권력을 타파하였다. 이른바 세계3대시민혁명은 기본적 인권의 사상과 법제 형성에 있어서 출발점이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형성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것은 프랑스의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이었다.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이나 미국의 <버지니아주헌법> 또는 1791년 <미국헌법부가조항> 등의 권리선언은 모두 시민계급이 확보한 기본적인 인권을 선언하고 있다. 즉 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 권리는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박탈당할 수 없다는 것(자연법적·천부인권적인 사상의 표명), ② 국가권력은 시민이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사회계약론적·국민주권론적 국가관의 표명) 등이다.

기본적 인권은 실상 이런 사상적 배경에서 실정화된 것이지만, 그것은 시민혁명이 완성된 사회에서만 실현되었다. 실질적으로 시민혁명이 완성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형식상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가 형성되고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혁명과정에서 형성된 기본적 인권은,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절대주의 국가가 시민의 모든 자유에 개입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발생했고, 또한 혁명은 절대주의 국가의 철폐를 그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었고, 개인이 국가의 개입과 억압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정신 활동을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번영이 확보될 수 있다는 개인주의 및 자유방임주의를 그 사상적기초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자본주의는 급속히 발전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을 거쳐 성숙기에 이르자 노동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도리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컨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경우에 사용자 측에서는 <계약의 자유>가 명실상부한 자유로 되었지만,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형식상 내지 법률상의 자유는 도리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폐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제과정에 개입해야 하며, 국민은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제1차세계대전 이후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만성화하게 되자, 이러한 인식은 법률상으로 표현되었음. 즉 바이마르헌법이 처음으로 국민의 생활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했던 것이다. 바이마르헌법은 특히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국가로부터

터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이나 노동권·생존권 등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선언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헌법은 모두 이러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4. 인권의 내용 및 분류

현재 각국의 헌법은 종래의 고전적인 기본적 인권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생활배려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적인 기본적 인권도 규정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정권이나 재판받을 권리, 즉 통치구조에 관련되는 권리도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의 기본적 인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개인권적 기본권: 정신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 등),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체포·구금·수색·압수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보장, 고문의 금지) 등
- ② 생존권적(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노동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
- ③ 능동적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참정권·청원권, 재판받을 권리 등과 같이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 등
- ④ 이 외에도 헌법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 다른 기본권의 모든 면에 보편타당한 일반적·원칙적인 성질의 기본권 등

그러나 각국에서 대체로 보장되고 있는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대립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국제화·세계화가 진전되어 1948년 국제연합에서 의결된 세계인권선언, 1966년 법적효력을 가진 국제인권규약 등이 채택되었다.

5.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

1948년 3월에 군정법령에 의하여 도입된 구속적부심사제도(拘束適否審査制度)가 최초의 기본권보장제도로 등장했다. 동년 7월, <헌법>의 제정으로 서유럽식 기본권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른 기본권이론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960년 제2공화국헌법은 기본권의 보장을 보다 강화시켜 자유권에 대한 법률유보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할 수 없게 하였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였다.

1987년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① 기본적 인권의 자연권성 내지 천부적 인권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등 여러 가지 현

대적 유형의 인권을 새로 규정하고, ③ 죄형법정주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④ 국가적 의무를 크게 강화하고, 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환기시키고, ⑥ 정부에 의한 부당한 기본권침해를 예방하려 하고, ⑦ 국회에 의한 통제를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보장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현행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앞의 평등

나. 자유권적 기본권

- ① 인체의 자유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 ② 사생활자유권: 사생활 자유, 주거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다. 경제적 기본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라.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마. 청구권적 기본권

- ① 청원권
- ② 재판청구권
- ③ 국가보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④ 국가배상청구권

바. 사회적 기본권

- ① 인간다운 생활권
- ② 사회보상수급권
- ③ 교육을 받을 권리
- ④ 노동의 권리
- ⑤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⑥ 환경권
- ⑦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보호권,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3절 경찰수사와 인권과의 관계

1. 경찰업무와 인권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면 경찰업무 그 자체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이 된다. 즉 범죄나 재해사고 등으로부터 주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순찰활동이나 미아를 보호하고 부모를 찾아주는 일 등이다.

그러나 경찰업무가 그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상황 하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흥분한 가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보면 가해자가 인권침해라고 소리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집회를 해산하거나 도로점거자를 막으려다보면 시위참가자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사회질서를 해치고 개인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아동 성폭행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다보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피해자와의 대질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등 한마디로 경찰업무의 상당부분은 법집행과 인권침해사이에서의 매우 위태로운 외줄타기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²³⁾

또한 법집행자로서 경찰관은 그들의 고객인 공중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치해있는 인간행위의 감시자들로서 이해되는 업무의 특성상 시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늘 발생한다. 경찰관들은 빈번히 그들의 법집행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해 만약 자신이 위협에 처하게 되면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결국 의지할 곳은 다른 경찰관들 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 사회생활과 교제의 자리에는 간혹 법의 위반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경찰관이 있다는 것은 그 경찰관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도 한다. 아울러 경찰관들은 자신의 직업상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사교적인 성격의 모임이나 상담이나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교적 상황에서 경찰의 불친절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면 경찰은 그들 자신이 직접 책임이 없는 행위 때문에 대중의 적대감의 대상이 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경찰은 통상적인 사교적 접촉을 꺼리고, 자신의 경찰동료들이 덜 이상하고 덜 위협적이며 훨씬 더 사람을 편하게 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교대근무제와 비정기적인 휴무도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경찰은 그들이 봉사하는 대상인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생겨 이로 인해 ‘포위되어 있다는 의식’(seige mentality), ‘우리-

23) 고상준·김희은·이승마·장윤경·표창원, 『경찰인권교육방법』(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 p. 43.

저들이라는 의식’(us-them mentality)이 생겨나고, ‘저들’은 ‘우리’에 대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협조를 제공하는지에 의해 다시 구별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저들’의식이 지배하게 되면, 충성이라는 덕목이 중시되며, 이런 충성은 동료경찰관을 보호해주는 소위 ‘침묵의 규범’(code of silence), ‘침묵의 푸른벽’(blue wall of silence)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관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지식이 높아야 하며, 인권침해를 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²⁴⁾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을 비롯한 형사소송법과 경찰직무집행법 등에서도 경찰업무와 관련된 국내인권규범을 명문화하고 있다. 즉 체포와 관련된 인권규범(헌법 제12조 5항, 형소법 제72조와 제201조의 2 제1-2항, 형소법 제200조의 4-5, 제212조, 제214조 등),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인권규범(헌법 제11조 제1항, 형소법 제180조-제181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인권규범(헌법 제12조 4항, 형소법 제34조), 고문 및 가혹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인권규범(헌법 제12조 제2항, 제7항), 평의 및 피해사실 공표 금지를 규정한 인권규정(헌법 제27조 제4항, 형소법 제198조),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인권규범(헌법 제21조 제1항), 도청 및 불법감청 금지 등 통신비밀 보호를 규정한 인권규범(헌법 제18조), 피의자·피구금인 신체수색과 관련한 인권규범(형소법 제124조, 제141조 제1항-제3항) 등이 있다.

2. 경찰과 인권의 상관성

경찰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민중의 지팡이’ 라는 영예로운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일반 시민이 어려울 때 지팡이처럼 의지가 되는 존재라는 뜻일 것이며, 여기에는 인권 수호자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경찰은 역할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의 행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권한을 잘못 행사하게 되면 개개인에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차선책으로 배상이나 관련자 문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인권수호자로서의 경찰은 민주국가의 ‘실질적인 법치주의’²⁵⁾ 실현이라는 과제

24)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 (2006-01), pp. 3-4.

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우리 현행 헌법의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국가는 주권자인 자신들을 통제한다는 이른바 ‘법의 지배’를 추구한다. 법치주의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그 법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적극적으로는 국가권력 발동의 근거(법의 제1차적 기능)가 되고,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근거(법의 제2차적 기능)가 된다.

그런데 법이 국가권력 발동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의 법치주의는 전제군주국가나 독재국가에서도 볼 수 있다. 전제군주와 독재자도 그들의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복종을 요구한다. 이와같은 ‘형식적 법치주의’²⁶⁾는 민주국가가 지향하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이 부패하기 쉬운 절대권력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법치원리의 타락이자 자살이기 때문이다. 법치의 진정한 의미는 정치권력을 엄격히 규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다. 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기에 그 집행을 위임받은 공권력은 ‘비례성의 원칙’²⁷⁾ 의해서 엄격히 제한받아야 한다.²⁸⁾

3. 한국경찰과 인권문제

우리 현대사의 정치적 질곡으로 인해 오랫동안 공권력은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경찰이 지나가기만 해도 주눅이 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드나들지도 말아야 할 곳’으로 경찰서를 손꼽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좌우 이념대립의 상황에서 실무에 밝은 일제의 경찰관을 대거 경찰 지휘부에 포진시킴으로써 민주경찰로 다가가지 못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일제 경찰의 모습을 따라 갔다. 또한 1970-1980년대에는 경찰이 정권유지의 일선에서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폭력경찰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 때문에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한 온당한 법집행의 상황에서도 지금의 경찰과 과거의 경찰 모습이 교차되면서 경찰에 대하여 거리감을 갖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경찰에 대해

25) 실질적 법치주의란 정치권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주국가에서의 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됨.

26) 전제군주와 독재자도 그들의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들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정치적 폭력을 형식적으로 규범화하여 국민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임.

27) 공권력 행사의 비례성원칙은 ① 적합성의 원칙: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함, ② 최소침해의 원칙: 공권력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③ 균형의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그 제한을 통해 얻는 공익을 엄격하게 따져보아 후자가 클 때만 작동해야 함, ④ 과잉금지의 원칙: 공권력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됨.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경찰과 인권』 (2002.10), pp. 17-18.

서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시민들의 태도는 정의실현의 사명감으로 입문하여 격무와 위협을 견디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시민 위에 군림했던 경찰의 과거 역사가 현재의 우리 경찰 후배들에게 남긴 부채이기도 하다.²⁹⁾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우리 경찰은 과거의 부정적 경찰 인상을 지우고 선진민주적 경찰,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경찰, 한마디로 ‘선진민주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우선, 불법시위의 진압에 중심을 두던 정책에서 벗어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친절, 인권침해방지, 공정한 수사, 욕설·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의 금지,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보장, 피의자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조사경찰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피의자 신문시 변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감찰의 활동을 강화하고 청문감사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인권교양자료집도 제작·배포하였으며, 수사교육과정에 인권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인권단체와 협조하여 인권강사를 초빙하는 등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국민의 인권의식의 신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고소, 고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제기된 인권침해의 유형별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가장 많으며,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³⁰⁾

4. 한국경찰수사와 인권침해문제

경찰의 많은 업무분야 중에서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수사와 관련된 영역이다. 특히 경찰의 인권침해는 주로 범죄수사, 불심검문, 시위진압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범죄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경찰문화 및 관행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그나카르타와 권리장전의 본고장으로서 형사절차 등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시민인권보호에 가장 앞선 나라, 즉 가장 모범적인 선진민주인권경찰제를 실시하고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영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까지 고문 및 강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문제³¹⁾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도 경찰의 인종차별 및 가혹행위 시비³²⁾가 끊이지 않고

29) 위의 책, p. 19.

30) 고상준·김희은·이승마·장윤경·표창원, 『경찰인권교육방법』(2003), pp. 43-44.

31) 예컨대 1989년 Guilford Four 무죄사건과 1991년 Birmingham Six 무죄사건 등을 들 수 있음. Robert Reiner, *The Politics of The Police 2nd Edition*(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83-85.

32) 예컨대 1991년 LA폭동의 원인이 된 로드니 킹(Rodney King) 사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루

발생하고 있다.³³⁾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기관의 임권침해에 대한 고소·고발이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2001년 11월-2006년 10월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은 모두 2만1,598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 인권침해가 1만 7,263건이나 된다. 특히 진정의 80%가 구금·보호 시설(7,705건)이나 검찰(955건)과 경찰(3,769건)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이고, 그 중에 경찰관련 진정사건에 의한 인권침해 유형별 현황을 보면 폭행, 편파수사, 가혹행위, 인격권침해, 수사미진, 수사오류, 체포요건 결여, 강압·부당감금, 피의자권리 미고지, 과잉진압 등이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1. 11. 26. ~ 2006. 10. 31.)

(건, %)

구분	접수 (A)	사 건 종 결														조사 진행 (A-B)	처리율 (B/A)
		소계 (B)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계	21,598	20,062	11	5	10	584	30	28	7	5	204	13,808	515	4,729	126	1,536	92.9
(%)		100.0	0.1	0.0	0.1	2.9	0.1	0.1	0.1	0.0	1.0	68.8	2.6	23.6	0.6		
차별행위	2,639	2,273	0	0	10	175	0	0	0	0	31	1,625	14	411	7	366	86.1
인권침해	17,263	16,101	11	5	0	388	30	28	7	5	168	10,612	492	4,239	116	1,162	93.3
기타	1,696	1,688	0	0	0	21	0	0	0	0	5	1,571	9	79	3	8	99.5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검색일자: 2006.12.12.)

그러나 경찰수사와 인권침해의 문제에 있어서 각 형사사법절차의 단계중에서 경찰 단계만을 나누어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록 첫 단계는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판절차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와 인권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을 보더라도 경찰의 수사과정만을 논의의 초점으로 한 연구보다는 형사절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 객체는 피의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훨씬 많았다. 또한, 피의자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경찰은 인권침해의 주체로만 논의되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경찰이 인권침해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해선 안될 것이다. 인권침해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신장하면서 그 내용들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의 폭력, 가혹행위는 물론 수치심을 유발하

이지애나주 뉴올리안즈의 흑인 전직교사 구타사건 등을 들 수 있음.
33)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2006-01), pp. 6-7.

는 행위, 불공정한 수사도 오늘날 인권침해로 생각하게 되었다.

경찰권행사에 있어서 기본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라 명확하면서도 정당한 법적근거하에서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하며, 그 범위와 한계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정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공권력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절차의 적정절차의 공정성은 인권보호적 원리인 동시에 공권력을 실현, 제한하는 원리이다. 적법절차는 공권력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이면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오늘날 공권력행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권을 발동함에 있어서는 절차를 위배해서는 안되며, 특히 상대방에 대한 각종 고지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고, 공권력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발동해야 한다.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어야 할 것이고, 또한 공권력의 발동 정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공권력의 발동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남용을 막기 위하여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는 공권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명백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험이나 위험발생이 급박한 경우에만 발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발동한다면 그 정당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자칫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하나, 직무수행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부주의한 사건처리, 수사가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을 어느날 갑자기 ‘지명수배자’로 만들어 생활에 불편함을 줄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주위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고 신용에 있어서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경찰의 무신경한 업무처리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수도 있고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경찰의 수사과정중에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시위와 무관한 시민이 시위현장을 지나다 불법적인 시위 참가자로 오인받아 경찰로부터 못매를 맞아 뇌수술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신고포상 교통위반 통지서를 발부, 발송함에 있어서도 운전석 옆의 탑승자 얼굴을 가리지 않고 교통위반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의 불만이 가중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수사활동과 인권보호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으로서는 ① 영장제도와 실질적인 인신구속, ② 별건체포, 별건구속³⁴⁾과 그 남용의 폐단, ③ 성범죄³⁵⁾의 수

34) 별건구속이란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려고 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본건과 관계없는 경미한 범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우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함. 별건구속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별건구속은 첫째, 구속사유가 없는 경우에 자백의 강요 내지 수사의 편의를 위해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하며, 둘째, 영장주의에 반하고, 셋째, 본건구속에 대한 구속기간의 제한을 벗어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사 절차상의 편의 또는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별건체포, 별건구속을 남용하는 것은 조속히 없어야 할 실무상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사와 여성의 인권³⁶⁾, ④ 불공정한 수사, ⑤ 심야조사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 신고자의 인권보호, 경찰의 인권보호로서 ① 경찰의 범집행과 공무집행방해, ② 유치장과 신체검사, ③ 총기 등 장구의 사용 등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장 경찰수사과정상 인권침해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인권침해 실태

경찰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실태는 언어적 침해, 신체적 침해, 기타 가혹행위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³⁷⁾ 즉 첫째로, 언어적 인권침해는 ① 반말이나 무시하는 말, ② 욕설과 폭언, ③ 협박, ④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진술 및 자백강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신체적 인권침해는 ①신체적 폭력, ②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부상경험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기타 가혹행위는 ① 밤샘조사, ② 음식물이나 물을 먹지 못하면서 자백을 강요당한 경험, ③ 성적 모욕감과 성추행·성폭행, ④ 고문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우리 경찰의 수사활동상 인권침해 실태는 ① 피의자의 권리 불고지, ② 체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③ 영장없는 압수수색, ④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수사, ⑤ 총기 등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⑥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⑦ 고문, ⑧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⑨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⑩ 불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 미흡 등을 들 수 있다.³⁸⁾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사회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사례에 따른 경찰의 수사활동상 인권침해 실태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5) 성범죄란 강간, 어린이 성추행을 포함한 각종 성폭행, 성적 학대와 성적 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이 해당함. 성폭력이란 여성의 인간존엄에 관한 권리와 신체적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36) 수사과정과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인격권의 침해유형을 보면, 첫째, 수사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 둘째, 고압적 편파수사를 들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피해 여성들을 강력 사건의 범인을 취조하듯 압박지르는 것 셋째,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피해사건과 관계없는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 넷째, 수사과정 및 피해사건처리과정에서 수사관이 가해자들을 두둔하거나 합의중용, 고소취하 강요 등이 이루어지는 것 다섯째,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대질신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 여섯째, 피해자 동석인 인정 및 보호조치 소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37) 국가인권위원회,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3.5.30), pp. 72-100.

38) 고상준·김희은·이승마·장윤경·표창원, 『경찰인권교육방법』(2003), pp. 45-48.

1. 피의자의 권리 불고지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강제연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피의자가 담당경찰관에게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죄질이 나빠 신문을 해도 소용이 없다며 신문신청권의 포기를 종용하고 신문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에게 실질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는 사례를 들 수 있다.

2. 체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경찰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나 연행된 경우, 또한 현행범이 아닌데도 영장없이 체포 및 연행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도주를 준비한 흔적이 없이 새벽 6시 30분경 집에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긴급체포, 또는 오후 4시 30분 구청장실에서 집무 중 긴급체포된 예를 들 수 있다.

3. 영장없는 압수수색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없이 가택과 사무실을 수색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영장없이 아이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집안을 수색함으로써 공포심을 조성한 후 물건들을 가져간 사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드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례, 노동자회 사무실에 철문을 드릴로 뚫고 사무실 벽을 뜯고 침입하여 컴퓨터와 상담자료 및 책 등을 압수해 간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4.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수사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시위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상해를 당하고 연행과정에서 목발 압수, 알몸 수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장 등을 고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 장애인에게 목발은 발과 같은데 목발을 빼앗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강간 피해자인 농아자가 수사과정에서 수화통역사없이 진술하다가 나중에 수화가 서툰 통역사를 통해 진술하여 통역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게 되어 가해자가 불기소로 풀려나게 되었다가 나중에 재수사를 받

고 기소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수사시 통역의 미숙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 정신박약자로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해 자백받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5. 총기 등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경찰이 도주하던 피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하여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성폭행피의자가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뒤따라가던 경찰관이 쏜 권총에 아랫배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숨진 사례, 시위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하거나 시위 중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맞아 부상한 사례를 들 수 있다.

6.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에게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접견을 거부하거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고문

고문은 인간에 대한 파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후유증은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금지돼 왔는데, 1심과 2심의 재판에서 살인혐의로 실형을 받고 대법원상고 중에 있던 진범이 잡힘으로써 피고인이 석방되거나 구속 당시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의 신분이었으나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연행되어 3일 동안 3시간만 잠을 잔 상태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다가 자백하였으나 대법원 재판 중 진범이 잡힌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어린이 유괴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손목이 수갑에 눌러 생긴 멍자국, 왼쪽 무릎 안쪽에 바닥에 비벼져 생긴 상처가 아물어 나타난 흉터, 왼쪽 발 두 번째 발가락 발톱 밑에 피멍이 확인된 경우,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범인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재판부의 신체검증에서도 고문 사실이 확인되어 무죄선고를 받는 사례도 들 수 있다.

8.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 밤샘수사, 회유 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에컨대 여름에 냉방이 되지 않는 조사실에서 새벽 1시까지 조사하고 다시 새벽에 일찍 불러 사실상 잠을 못자게 하거나 조사관들이 번갈아가며 밤샘조사를 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사례, 하루종일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사례, 자백하면 같이 구속되어 있는 처와 처제를 풀어주겠다고 회유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간경화로 인해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며 안정을 취하지 않은 채 수사를 강행할 경우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강행하거나 구치소 이감 후에도 통원치료를 불허하거나, 만성디스크로 평소에도 제대로 서 있거나 걷기도 힘들어하며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상태인 환자에 대하여 눕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강행하여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여 병이 악화된 경우, 진료팀과 변호가사 왕진 및 접견차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를 불허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9.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가정교사인 피해자를 고등학생인 가해자가 자신의 침대방에서 강제로 강간하고 거실에서 목졸라 죽이고 옥상 입구 앞 공간에서 칼로 찌르고 승강기를 이용해 김씨를 아파트 옆 공터에 버린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조서를 기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한국판 개인교수’ 식의 선정적인 보도가 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불륜한 성행위가 빚어낸 단순살인사건으로 왜곡되도록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를 말한다.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의 발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도 포함된다.

10. 불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 미흡

술집 주인과 다툼이 생겨 무허가 주점이라는 신고를 한 신고자를 폭행하고 파출소로 연행한 후 목격자의 진술을 왜곡하고 조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장 찍기를 강요하고 부인이 경찰관을 남편이 폭행했다는 진술서를 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심리적 압박 가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대학생과 조직폭력집단과 술집에서 다툼이 생겨 일방적으로 야구 배트 등 흉기로 구타를 당하여 상처를 입고 일행의 일부를 납치 감금되어 폭행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엔 검거된 조직폭력집단의 간부가 파출소에서 “내가 징역을 가게되면 동생들을 시켜서 칼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고 협박을 하는 등 조사받는 동안에도 협박을 당하였으나,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의 검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납치 감금 사실을 누락하는 등 경찰의 사건 축소 의혹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대질문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성시켜 합의를 유도한 경우,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경찰에서는 아무런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과 얼굴 등을 노출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복 우려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 조치 요청 무시 경우도 들 수 있다. 그밖에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측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사건을 처리한 후 재조사 해당 경찰관을 징계한 경우, 이 경우엔 목격자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아 일방적인 사건처리라는 의혹 사례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경찰청,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진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제2절 문제점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수사기관이 인권보호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불법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활동일지라도 수사기관의 일상적 업무 수행이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수사의 경우 나중에 무혐의 결정, 무죄판결 등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언론 보도, 소문 등으로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향후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구속기간 중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가져온다. 또한 가족들의 고통도 적지 않다. 마음 고생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과 생활의 균형 파괴로 가족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³⁹⁾

따라서 제1절의 경찰수사과정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통해 체포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고지, 영장없는 체포, 고문 등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불공정한 수사과 미흡한 인권보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피의사실 유포 등⁴⁰⁾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그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체포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고지

체포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미란다원칙’⁴¹⁾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도

39) 국가인권위원회,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2003.5.30), p. 151.

4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경찰과 인권』(2002.10), pp. 27-54.

41) 미란다(Miranda)원칙이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자기부죄거부의 트권)을 근거로 Miranda V. Arizona사건의 판결(1966)에서 확립됨. 이 원칙의 고지내용은 체포(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임.

입된 것은 198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부터이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사실에 대한 고지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범집행 과정에서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체포현장의 상황에 따라 체포즉시 미란다원칙을 알려주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여 심하게 몸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동시에 많은 인원을 체포하는 경우 등이다. 그럼에도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는 것은 피의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영장없는 체포

범죄자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는 영장주의가 우리 법의 기본입장이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는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가 있다. 이 가운데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긴급체포의 경우이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체포 사이의 시간적 접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긴급체포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일관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영장주의의 예외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요건도 엄격하다.

3. 고문 등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고문은 인간의 몸과 정신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므로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경우이건 고문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 아래 과거 많은 공안사건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사독재 시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정권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던 사람들이 고문에 의해 용공으로 조작된 이력이 있다 고문은 시국사범들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여타 형사사건에서도 자백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인식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수사 관행이다.

고문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변호인 접견권의 철저한 보장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고문은 상당 부분 방지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지침을 마련한 것은 펍 고무적인 일이나 허용여부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의 폭이 넓

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불공정한 수사와 미흡한 인권보호

흔히 지역유지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온 사람과 다툼이 생긴 경우에 경찰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는 일이 있다. 지역사회 활동을 배경으로 형성되는 이러한 감정 때문에 신고자를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쌍방이 시비가 붙었는데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사 편의를 봐 주고 친분이 없는 경우에 가혹하게 수사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런 경우 우선 경찰이 과연 실제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는가 하였다면 어떻게 편파 수사를 막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의 편파 수사는 자체 검찰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나 경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불공정한 수사의혹을 제기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인권의 적극적인 보호 미흡에 대하여는 경찰의 현실을 생각할 때 무리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의무에 대한 방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보통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장애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안경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경을 주지 않는다거나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에게 목발을 압수하는 등의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하지 못하거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 진술과정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수사기관에는 법적 지식이 풍부한 통역사 등을 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경찰은 편견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불리한 수사나 조사를 막을 수 있다.

6. 피의사실 유포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는 자신을 변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언론에서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언론보도 사례와 같이 추측에 근거한 선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유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이외에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사실이 발표되면서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4장 경찰범죄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향상방안

제1절 경찰청의 현재 ‘인권경찰상’(人權警察像) 구현 추진방안

1990년대초부터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전 세계의 민주화 흐름이 사회주의와 권위주의 국가 및 체제를 붕괴시키면서 21세기 경찰도 이제 국민의 지지와 신뢰없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며 경찰의 조직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 인식의 확대 속에서 21세기 인권은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결과 못지 않게 민주적 절차와 과정도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사적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권대통령’으로 잘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우리 경찰도 본격적으로 인권중시정정책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2006년 창설 61주년을 맞은 우리 경찰은 치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덕목으로 ‘인권존중’을 내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인권경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선진민주인권경찰’의 긴 장정에 돌입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1004 PROJECT), 수요자 중심의 친인권적 고품격 수사서비스 제공 등⁴²⁾에 적극 나서고 있다.

1.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가. 인권보호센터 설립

인권경찰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의 인권정책을 총괄하여 추진

42) 경찰청, 『2006 경찰백서』(2006), pp. 280-307.

할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기존에도 감사관실·수사국·여성청소년과 등 각 기능별로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종합하고 선도하는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2005년 2월 22일 경찰청에 인권 전담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였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주요 업무는 ① 경찰업무과정의 인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정책의 기획, ② 인권시책에 대한 종합 및 조정, ③ 인권침해 신고·상담접수, 조사 및 조치, ④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⑤ 인권관련 정책, 제도, 법령에 대한 의견제시, ⑥ 인권수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시민인권보호단 운영 지도, ⑦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 등과 업무 협조, ⑧ 인권시책 이행 실태 확인·모니터링·평가, ⑨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이러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주요 업무는 집행관서에까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급 경찰관서에는 청문감사(담당)관과 수사과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나. 국민참여형 인권감시체계의 구축

(1) 인권수호위원회

민주적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2005년 5월 3일 「인권수호위원회」를 발족하여, 경찰의 인권관련 활동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참여형 인권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인권수호위원회는 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서 위원장을 비롯하여, 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인권수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HUMAN>)를 개설하여 국민에게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결과를 알리고,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인권수호위원회는 발족 이후 약 8개월간 정기회의 8회, 임시회의 2회, 연석회의 4회 등 총 14회에 걸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경찰의 인권 관련 활동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는 물론, 문제점 개선·시정을 위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인권경찰상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 시민인권보호단

시민인권보호단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경찰관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감시하고,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경찰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시민인권보호단은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및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건의서 제출·시정조치·결과통보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과 정책 환류 역할을 하였으며, 2005년 6월에 전 지방경찰청에 발족이 완료된 이후, 한 해 동안 정기회의 67회, 관서방문 638회, 의견제시 158건, 개선권고 79건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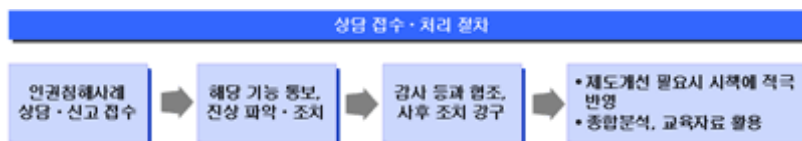
특히, 강원청의 경우에는 도내 17개 경찰서 수사팀에 대해 시민인권보호단이 직접 민원인 입장에서 전화응대를 점검·평가하기도 하였고, 충북청 시민인권 보호단은 경찰의 집회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위현장을 참관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감시체제를 구현하였다. 앞으로 시민인권보호단은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경찰 감시·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인권상담 시스템 구축

(1) 인권상담전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자권리 미고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먼저 2005년 3월 23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 ‘인권상담전화’를 설치하고, 이어서 각 지방청에도 인권상담전화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인권상담전화에 접수된 인권침해처리는 <그림 1>와 같이 절차를 거쳐 사후조치 및 제도개선 및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상담 접수·처리 절차도



<표 2>의 2005년도 인권침해상담은 1년간 총 182건을 접수하여 154건(84.6%)에 대해 답변으로 종결하였으며, 24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표 2> 인권상담전화 접수 유형(2005년)

총계	불법체포 · 감금	폭행·가 혹 행위	편파·불공 정 수사	피의자권 리 미고지	접견·교통 권 제한	피해자 보호 미 흡	기타
182	9	4	50	1	2	3	113

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정

(1) 제정 배경

그 동안 경찰의 인권업무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규정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경찰업무 전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2) 제정 과정

「인권보호경찰직무준칙」이라는 가칭으로 2005년 4월부터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200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와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라는 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 경찰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경험했고 느꼈던 인권침해 사항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총 14장 130개 조항으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초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T/F팀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조금씩 줄여가며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2005년 6월 초순경에는 T/F팀에서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았고, 그 이후 인권수호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각 장에서 공통된 내용이라든지 법규정과의 중복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적은 부분을 대폭 줄여서 총 6장 10개절 93개 조항으로 축소하였다. 드디어 2005년 8월말 법무과 심사를 거쳐 경찰청 최종안으로 상정되어, 인권수호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05년 9월 20일 경찰위원회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규칙은 10월 4일 ‘1004!!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에서 경찰청 훈령 제461호로 선포되었다. 통상적으로 경찰청 훈령은 ‘발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이번에는 ‘선포’라는 형식을 새롭게 사용함으로써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경찰의 결연한 인권의지를 표명하였다.

(3) 주요 내용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총 6장 10개절 9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제1장 총칙에서는 이 규칙의 제정목적과 ‘인권’, ‘사회적 약자’ 등 개념을 정의하고,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제2장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에서는 인권보호 원칙을 필두로 피해자 보호원

칙, 무죄추정 원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다른 경찰관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명령 또는 강요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권수호위원회」, 「시민인권보호단」, 「인권보호센터」, 「인권보호관」 등 인권보호를 위한 기구를 규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찰업무 수행 중 인권침해 소지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수사 분야를 5개절로 나누어 일반원칙 및 각 단계별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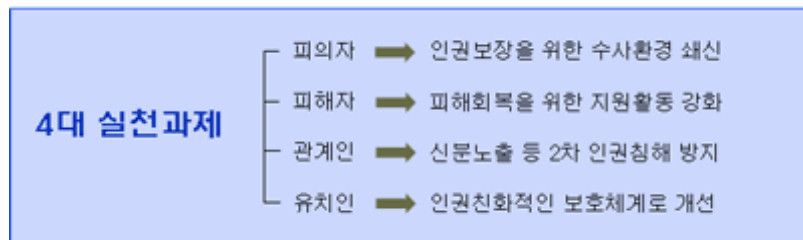
제5장에서는 집회시위시 인권보호를 위해 불법집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채증활동에 대해서도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 측 상호 채증활동을 보장하고 전·의경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규정하였다.

제6장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접수·처리 부서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2. 인권보호 종합추진 계획(1004 PROJECT)

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경찰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덕목의 하나로 ‘인류애로써 인권존중’을 표방하고 새로운 인권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 나갔다. 먼저 인권을 경찰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004 PROJECT」로 명명하였다. 「1004 PROJECT」는 우리 헌법 제10조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4대 과제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2> 인권보장 구현의 4대 실천과제



가.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환경 쇄신

(1) 불구속 수사 원칙의 정착

① 임의동행 절차 요건의 강화

임의동행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원할 경우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은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임의동행 동의서

임의동행 동의서

동행일시	2005. 8. 8 21:25
동행장소	김해경찰서 장유지구대
동행목적	112 신고사실(음주 소란) 확인코자
동행대상	성명 : 김 (연령) 43 세
담당경찰관	소속: 장유지구대 계급: 경사 성명 : 오 상 근

위 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으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5 . 8 . 8

위 본인 성명



(인)

- 13 -

② 긴급체포의 요건 강화

긴급체포를 할 때에도 체포의 긴급성을 엄격히 해석하여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만 긴급체포를 하도록 하였으며, 긴급체포를 할 때에도 「긴급체포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주무과장의 허가를 사전에 얻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선 긴급체포 후 긴급체포 사유와 사전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하고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여 사후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긴급체포 건수는 2004년 동기간에 비해 약40%나 줄어들었다.

③ 구속영장 신청전 「영장심의 위원회」 개최

구속영장 신청여부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건 담당자나 수사간부의 주관적 판단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사유를 근거로 체크리스트식 「구속적부 심사서」를 제작하여,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사건 관련부서의 과장 및 수사팀장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장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영장을 신청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다.

④ 형사활동 평가제도 개선

형사활동 평가에 있어서 구속 점수와 거의 동일하게 불구속 점수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영장관리 프로그램」에 구속영장 신청·기각율 항목을 포함시켜 개인별·관서별로 구속영장 기각율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각율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무리한 영장신청 관행을 개선하였다.

⑤ 수사간부의 지휘능력 제고

구속영장 신청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팀장 및 과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로 실제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장에 주력하도록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지휘서」에 사건별로 지휘내용을 기재하여 <그림 4>와 같은 ‘영장심의·구속영장신청 적부심사서’의 수사서류에 편철 및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영장심의·구속영장신청 적부심사서

【붙임 1】

〈 영장심의 - 구속영장 신청 적부 심사서 〉

요건	판단사항	판단기준 (예:○, 아니:×)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① 혐의의 상당성	① 소명자료에 의해 입증가능한 객관적·합리적 혐의와 범죄 인정이 가능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가	+	○	○	○	○
	②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횡수, 수법, 규모, 결과, 자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는가	+	○	×	×	×
	③ 피의자의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	×	×	×	×
	④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중인 질병이 있거나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지는 않는가	+	×	×	×	×
	⑤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해외여행이 잦은가	+	×	×	×	×
	⑥ 가족간의 결속력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가	+	×	×	×	×
	⑦ 배우자 또는 나이 어린 자녀, 연로한 부모가 없는가	+	○	○	○	○
	⑧ 가족들 중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구성원이 없는가	+	×	×	×	×
	⑨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이 지역사회와 유대관계가 없는가	+	×	×	×	×
	⑩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가	+	×	×	×	×
	⑪ 일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가 (체포영장 신청의 주거부정 요건 참조)	+	×	×	×	×
② 도주우려 주거부정	⑫ 물증의 은닉, 증인에 대한 위증이나 침묵의 강제 대상이 되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가	+	×	×	×	×
	⑬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	○	○	○	○
	⑭ 피의자가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가	+	×	×	×	×
③ 증거인멸 우려	⑮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	×	×	×	×
	⑯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	×	×	×	×
④ 종합판단 의견	적(適)	부(否)				
	○					

사 건	사건번호 : 제111110호	피의자 성명 : 김 기
담당자	소속 : 수사과 계급 : 경제3팀	성명 : 경사 김 기
심의 날짜	2005. 8. 29. 16:30	심의 장소 : 수사과 경제3팀 대
영장심의위원 확 인 (팀장, 과장)	위원1	직위 : 과장 계급 : 3년 성명 : 김 기
	위원2	직위 : 1 계급 : 2년 성명 : 김 기
	위원3	직위 : 2년 계급 : 2년 성명 : 김 기
	위원4	직위 : 3년 계급 : 2년 성명 : 김 기
	위원5	직위 : 3년 계급 : 2년 성명 : 김 기

(2)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심야조사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의자·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충실하고자 수사과정에서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해야 할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심야조사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조사자 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소년·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에게는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조사 참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주로 형사당직 근무시에 주로 심야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대부분이 규칙 제64조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자백피의자 면담제

① 추진배경

자백은 대표적인 증거로서 과거 자백에 의존한 수사관행이 주를 이루던 시절에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던 증거방법이다. 하지만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폭행·협박 등 비인도적인 방법이 사용되거나 심지어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자백을 통해 범죄인이 되었다가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풀려나게 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무리하게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백피의자 면담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주요내용

구속영장 신청사건 중에서 자백이나 정황증거 외에 특별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 등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이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여 인권보장 제도가 철저히 이행되었는지 또는 자백과정에서 고문·폭행·협박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자백피의자를 면담한 결과 상기 개연성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조사, 담당자 교체 또는 감찰기능에 의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현재와 같은 첨단 과학시대에는 직무 편의위주의 자백편중 수사에서 탈피하여 과학수사를 통한 증거수집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① 장애인 인권보호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05년 5월 12일에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건의사항 등을 참고로 장애인 시민단체 방문, 현장조사 및 관련 연구자료 수집을 통해 경찰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 경찰관

서에는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과 각종 설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보호센터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도하였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기 위한 인터넷 영상전화기를 시범운영하여 14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진술조서 등 각종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지방청별로 1 ~ 2개 경찰서에 보급하였다. 이에 일부 지방청에서는 농아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방경찰학교에 ‘수화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조사관이 기초 생활수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성적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 제5항)로 정의할 수 있다. 성적소수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성정체성이 아웃팅(outing)되거나 조사관의 편견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한 모욕적 언사로 혐오감을 느꼈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접함에 따라 경찰관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오히려 놀림거리로 만듦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보호센터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은 물론, 인권교육과정에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1) 피해자 중심으로 범죄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2004년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치밀한 첩보입수 및 검거작전과 방대한 수사활동으로 21건의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한 경찰수사의 개가였다. 또한 이어서 터진 밀양여중생 성폭력 사건은 무려 44명의 동네 학생들이 여중생들을 집단 성폭행하여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사건으로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여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담당 경찰관과 수사지휘부에 대한 문책과 함께 국민들로부터의 질책이 이어졌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피해자보호의 미흡’이다. 유영철 사건은 경찰관이 피해자 유족의 공격에 발길질로 대응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밀양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이 언론에 노출되고 피의자와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한 수사과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위의 두 사례는 우리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열심히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면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었고 앞으로 범죄대응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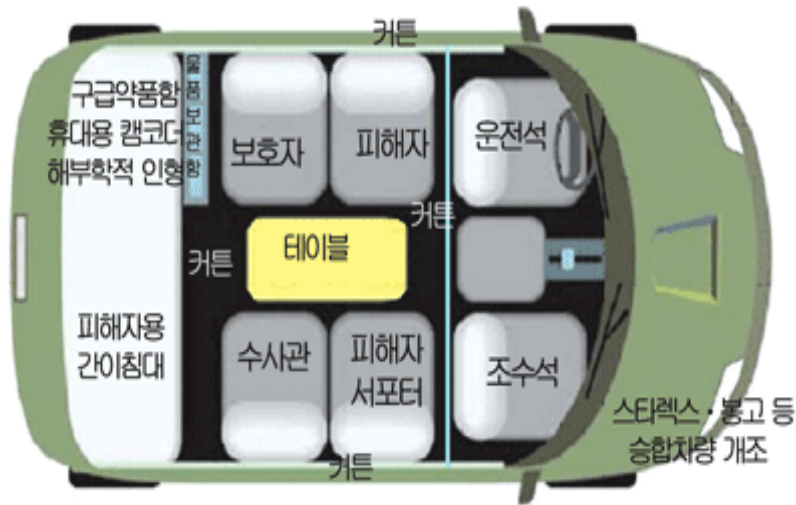
(2) 찾아가는 수사서비스 ‘이동식 피해자조사실’ 운영

‘이동식 피해자조사실’이란 일반 승합차량을 개조하여 내부에 책상, 컴퓨터 등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내에서 피해자 조사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만든 비노출 경찰차량이다. 강력범죄 및 신원보안이 요구되는 피해자의 경우 경찰관서외의 별도 조사공간이 없어 숙박업소나 피해자의 집 등에서 조사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경찰관서 출석 자체에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와의 대면에 따른 보복위협 및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림 5>의 이동식 피해자조사실의 운영체계와 <그림 6>의 이동식 피해자조사실 내부모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식 피해자조사실’은 피해자가 편리한 장소로 경찰관이 직접 진출하여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도 상담·의료기관 후송·상담기관 연계·귀가편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종합적 피해자 지원시스템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그림 5> 이동식 피해자조사실의 운영체계



<그림 6> 이동식 피해자조사실 내부모습



2005년 3월 1일부터 각 지방청별로 1개 경찰서 씩 선정(전국 14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19일 경찰규격위원회를 개최하여 규격을 통일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규격에 따라 신규로 제작된 차량 5대를 서울·경기·부산 등에 배정하는 등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자동문자통지시스템(SMS) 구축

그동안 범죄 피해자들은 사건을 접수시킨 후에 담당형사가 누구인지 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관서에 직접 전화해 보거나, 우편으로 사건진행사항을 통지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도 담당자가 없어 통화하기 어렵거나 적시에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SMS 자동통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건 접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범죄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SMS 자동통지시스템은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과 연계하여 사건접수·배당·수사진행·이송·종결 등 수사단계별로 사건진행상황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기관에서 일선 수사관들의 중간통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통지를 내실화하였다. 이 때 주요 통지내용은 ① 사건이 배당된 경찰관의 성명 및 사건접수번호, ② 피의자 검거 사실 등 수사과정의 변경사항, ③ 타 관서 또는 타 경찰관으로 사건이송 여부, ④ 사건종결시 송치일자 및 종결사유 등이다. 특히 사건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도 함께 전송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는 SMS 통지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수사행정의 신뢰·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우편

통지에 비해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과 경찰관들의 서류작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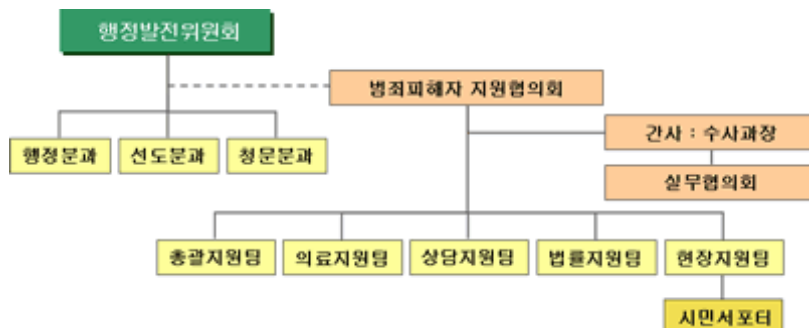
(4) 함께하는 피해자지원협의회

경찰의 자체적인 피해자보호 노력과 더불어 민간의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결을 통한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은 피해자대책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경찰서 단위마다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피해자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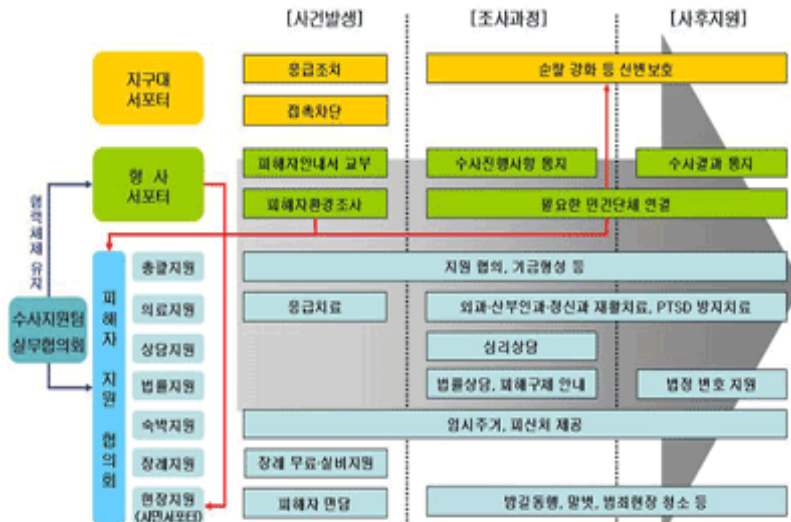
피해자지원협의회는 의료·상담·법률 등 전문적인 피해자지원 민간단체를 연계함으로써 ‘함께 하는 피해자지원’ 체계를 지향하였고,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서포터단이 피해자 면담·밤길동행·말벗·범죄현장 청소 등 세심한 현장 지원을 담당함으로써 ‘찾아가는 피해자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피해자지원협의회는 <그림 7>에서 보듯이 총괄·의료·상담·법률·현장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과장을 주관으로 하는 실무협의회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그림 8>과 같이 수사단계별 피해자지원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그림 7>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의 조직 구성도



<그림 8> 수사단계별 피해자지원 체계도



피해자지원협의회는 2005년 10월까지 전국 233개 경찰서 모두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피해자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각 피해자지원협의회가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사건관계인 신분노출 등 2차 침해 방지

(1) 수사사건 공보기준 마련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은 공판청구 전까지는 언론공개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외가 인정되어 왔으며 그 동안 이에 대한 기준과 한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관계인의 피의사실공표 등이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어 왔고, 국민의 인권의식의 신장으로 이러한 논란은 언론중재나 고소 등으로 이어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인권보호, 국민의 알권리 충족, 수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수사사건의 언론공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2) 화상대질조사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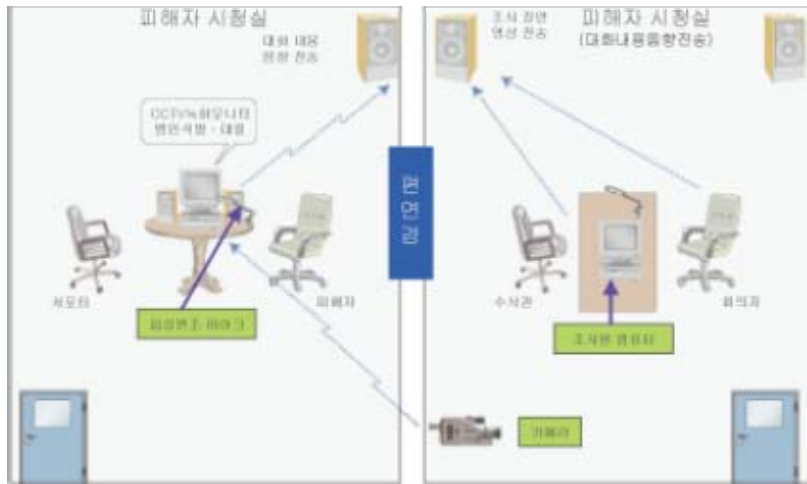
‘화상대질조사실’은 전자식 영상장비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간 서로 대면치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조사시스템이다.

강력범죄 등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공포·홍분·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위협으로 인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질조사라는 수사의 목적도 달성하고 가해자의 직접대면으로 인한 2차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화상대질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

다.

화상대질 조사실은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피의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편안한 상태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줌카메라·영상음향장치·조명조절장치·음향변조기 등을 설치하여 화상 및 음성 송수신에 의해 범인 식별 및 대질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림 9> 화상대질 조사실 내부 구조도



화상대질 조사실은 각 지방청별 1개소씩 선정하여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14개 경찰서에서 현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진술녹화실 확대설치 사업 및 경찰관서 뉴오피스(New Office)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표 3> 화상대질 조사실의 시범운영대상

지방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찰서	지방청내	사상	달서	중부	동부	구리	홍천
지방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서	청주 서부	대전 중부	군산	영암	경산	창원 중부	제주

라.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와 유치 행정의 효율성 제고

(1)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유치인 관리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 전까지 모든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미결구금 중인 유치인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

칙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항상 정면을 향하여 바르게 앉아’, ‘과오를 뉘우치고’, ‘교양을 성실하게 받아야’, ‘~해서는 안 되고 ~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등의 문구로 구성된 ‘유치인 준수사항’과 ‘유치인 선도 규정’, ‘명상의 시간’, ‘교양 및 정신 훈화’ 등으로 구성된 ‘유치인 표준 일과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인권보호센터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명령적인 ‘유치인 준수사항’을 <표 4>와 같이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으로 바꾸어 변호인 선임권, 면회시간 안내, 서신교환 안내, 유아대동신청권, 인권침해 상담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 유치인의 법적 권리를 제시하고, 문구도 ‘~이 필요하면 유치인 보호관에게 말씀하십시오’라는 보다 친근한 표현으로 개선하는 한편, 유치인 표준 일과표도 기상, 취침 및 식사 시간 등 단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일과를 안내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TV방송·신문·도서 등 자율적으로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표 4>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1. 변호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이외의 사람과도 접견(면회)이 가능하고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금지되고, 식량 및 의류품의 경우 규칙에 따라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합니다.)
3. 접견 및 면회 시간은 평일 03:00~21:00, 일요일 및 공휴일 09:00~20:00 이며 1일 3회, 1회 3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인의 접견은 제한 없음)
4. 편지를 쓰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은 행형법에 따라 발송 및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가족 및 친지에게 특별히 연락을 취하고자 할 경우 유치인보호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유치장 내에서 발병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영치금의 한도 내에서 사식을 취식할 수 있습니다.
8. 여성의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대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치인 보호관이 나 감독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10.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 인권보호관(수사관장·청문감사관) 및 경찰청 인권보호센터(02-313-7035)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1. 구속피의자, 피고인 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형사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지부·출장소 ○○○-○○○○)
12. 기타 필요한 사안은 유치인보호관에게 말씀하십시오.

(2) 여성전용유치실 및 외국인방 설치

여성유치인과 외국인 유치인의 수용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유치환경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여성유치인의 경우 분리 수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성유치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문화·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남성유치인실과의 사이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차폐막을 설치하고 깨끗한 내부환경과 밀폐형화장실을 갖춘 여성전용유치실을 종암서 등 5개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외국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외국인의 신체 특성에 맞는 식사와 신체검사의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유치실(외국인 방)을 용산서 등 8개서에서 운영하였다.

(3) 유치인 처우 개선

유치실의 화장실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용변시 발생하는 소리와 냄새가 외부로 유출되어 유치인이 수치심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에티켓벨을 설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도서를 모으고 이동식 책장을 제작, 유치인에게 책을 대여하는 ‘나눔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유치인들의 정서 안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침구류 뿐 아니라 칫솔, 치약, 화장지 등 기본 생활필수용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호송시 호송용 차량에 커튼 등을 설치하여 유치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치인의 처우도 한층 강화하였다.

(4) 광역유치장 시범운영 등 유치행정 효율성 제고

종전에는 유치인이 입감될 때 그 영치금을 경리계 또는 상황실에 보관하여 유치인 석방시간이 지연되고 실무적으로 매우 불편하였다. 이를 개선하여 영치금을 유치장에 보관토록 함으로써 유치인의 석방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영치금품 인수인계 절차로 번거롭고 불편했던 유치장 업무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요가 없는 2·3급지 유치장을 인근 경찰서 유치장으로 통합하여 유치인 보호관 및 예산을 집중 운영하는 광역유치장을 도입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남을 비롯한 7개 지방청 관할의 유치장 중 18개 경찰서의 유치장을 없애고 14개소로 통합운영을 시작하였다. 18개 피통합서에서 모두 7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그 중 36명은 광역유치장 운영 경찰서의 유치인 보호관으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34명은 피통합 경찰서의 수사인력으로 보강되었다. 광역유치장으로 지원된 36명 중 5명은 다시 통합서의 수사인력 등으로 재배치되었다. 이로서 충분한 유치인 보호관을 확보하여 유치인 보호체계를 한층 단단히 구축하는 한편, 예산을 절감하고 수사인력의 증원으로 치안역량도 강화하였다.

<표 5> 광역유치장 시범운영 경찰서 현황

(단위 : km,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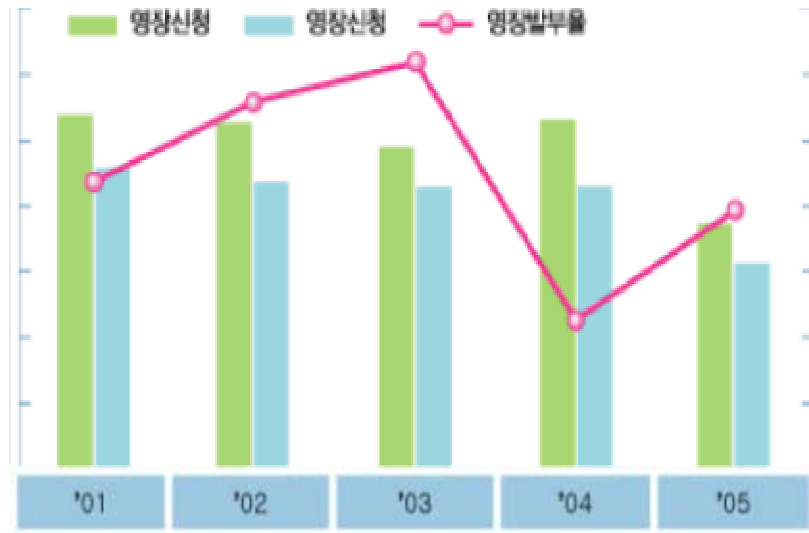
연번	지방청	피통합서	통합서	거리(km)	소요시간(분)
1	강원	횡성	원주	16	20
2	충북	단양	제천	34	35
3		옥천	영동	30	35
4	충남	부여	논산	21	20
5	전북	임실	진안	42	40
6		무주		30	30
7	전남	강진	장흥	15	15
8	경북	군위	의성	25	20
9		예천	문경	26	20
10	경남	마산중부	마산동부	10	15
11		진해	창원중부	16	15
12		사천	진주	35	40
13		하동		50	45
14		산청	통영	36	40
15		고성		18	15
16		합천	거창	42	45
17		함양		60	40
18		의령		함안	21

3. 수요자 중심의 친인권적 고품격 수사서비스 제공

가. 불구속 수사원칙 정착 풍토 마련

금년들어 법원의 불구속재판원칙 고수, 엄격한 영장심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신청 영장미발부율은 <그림 10>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추세로 전환하였다. 이는 구속영장신청 요건의 엄격한 심사, 시민인권보호단 운영 등 구속수사 적법성에 대한 국민감시 체제를 구축('05. 4.28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대책)하는 한편,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영장신청의 신중성을 제고('05. 7.20 불구속 수사에 따른 신병처리 가이드라인)하는 등 그간 경찰의 불구속 수사원칙 정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그림 10> 구속영장 신청 미발부 현황(2001~2005년)



<표 6> 구속영장 신청 미발부 현황('01~'05년)

(단위 : 명, %)

	'01	'02	'03	'04	'05
영장신청	107,493	100,854	97,873	106,382	74,281
영장발부	91,083	87,533	85,533	85,601	62,297
영장발부율(%)	84.7	86.7	87.4	80.5	83.9

나. 고소사건 즉일조사제 확대 및 현직 수사경찰관을 상담창구로 활용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한 고소인이 당일 사건담당경찰관과 상담·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차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줄 수 있는 고소사건 즉일조사제를 확대·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신속한 수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수사민원상담관의 민원상담제도와 함께 실제 전문수사능력을 갖춘 경찰관으로 하여금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감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운영(서울 성동경찰서 등)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진술녹화실 설치 등 경찰 조사시스템 개선 사업 시행

사건관계인 구두진술의 문서화에 따른 신문시간의 장기화, 조사시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 신문과정 중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진술의 임의성·신빙성 확보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취지 하에 서울 양천경찰서를 시작

으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수사부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수사부서 리모델링 등 조사 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인과 수사관이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

라. 원격지 화상조사제, 촉탁수사 적극 활용 등 국민편의 도모

원격지에 거주하는 참고인 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화상조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체제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잦은 경찰서간 이송으로 인한 사건의 지연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수사경찰관으로 하여금 촉탁수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수사경찰 민원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

마. 수사이의사건 체제 정비로 공정·투명한 경찰수사체제 확립

수사이의사건 전담요원 부족, 최초 이의사건 제기 경찰관서 재배당 등 민원인에 의하여 제기된 수사이의사건 처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인 불만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별로 최소 2인 이상의 수사이의조사팀을 설치 보장하고, 수사이의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책임 하에 직접처리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2절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장방안

앞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아직도 경찰수사과정에서의 다양한 인권침해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언어적 인권침해인 반말, 무시하는 말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욕설이나 폭언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 외에도 협박,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진술이나 자백 강요 등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힘써야 한다. 예컨대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임을 감안하여 고통을 함께 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의 신문시에 인격적인 침해를 느끼지 않도록 모욕적인 질문을 자제하고 반복적인 신문을 회피하여야 하며 피해회복 여부 및 처벌의사의 유무·범인에 대한 감정 등을 신중히 조사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사건처리에 참작하여야 한다.

특히 경찰수사과정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으나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불법적 인권침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찰의 인권교육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폭력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교육기관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찰수사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경찰수사과정상 인권보장의 방안은 다음과 같이 법절차의 준법화, 인권교육의 철저화, 수사환경과 수사관행의 개선화,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확대화 등⁴³⁾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법절차의 준법화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수사관련 각종 법규에는 피의자의 보호를 위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불법적인 인권침해의 시비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수사과정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협박이나 폭행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만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폭행 등 물리력의 행사, 밤샘조사, 가혹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과정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수사과정의 불법행위는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금전적인 손실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조사관에게 피해가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청문감사관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선에까지 제대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의 선행연구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적법한 절차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 등도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때 인권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2. 인권교육의 철저화

43) 국가인권위원회,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2003.5.30), pp. 159-160.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평소의 교육훈련의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이 점에서 경찰관들이 확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평소의 업무집행시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반말 등은 수사관들이 인권침해로 인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철저한 인권교육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에 대한 교육을 경찰에게 실시할 경우에는 인권을 보호할 경우 법집행이 어렵다는 생각을 불식할 수 있으며,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방해에 대하여는 자신을 가지고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엄정한 법집행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권교육이 막연한 정신교육으로 이루어져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체계적·구체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단순하게 인권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법집행이 왜곡되어 경찰의 사기저하와 법질서의 문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개발이 매우 중요시 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찰은 학력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초임교육시에 철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경찰수사상의 인권침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 초임경찰의 인권교육현실은 아직도 인권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 않는 것이 실제상황이다. 순경의 초임교육시 인권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은 8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기간이 짧다는 한계도 있으며 다른 과목에서도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지만, 경찰의 인권중요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인권교육시간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순경을 비롯한 전 경찰관의 교육시에는 그 기간을 늘리더라도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과과정의 현장에서 인권보장에 관해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간부를 배출하는 경찰대학의 교과목 편성에서도 직접적인 인권과 관련된 독립된 과목배정이나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니와 유사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도 충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찰간부들의 교육기관에서도 최근에 인권교육과목이 개설되어 그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찰 고위간부들의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일선 경찰교육관에서 인권교육도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간부들의 교육기관에서 무엇보다도 인권교육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인권교육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때 철저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상황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그에 따른 반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인

권교육을 강화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경찰초임의 교육시 인권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현재 경찰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의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상황대처 능력에 대한 인권교육보다는 정신교육의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공허한 인권교육이 되기 쉽고 실무에서의 활용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안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숙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그 매뉴얼은 사안별 진행상황에 따라 행동요령을 밝혀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경찰활동의 모든 것을 매뉴얼화하기란 단기간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은 당장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자 배포한 ‘대여성. 아동 범죄 실무 매뉴얼’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매뉴얼은 사안별로 대처능력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추상적인 현장이나 인권보호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인권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부딪혔을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법을 평상시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도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의 인권교육이 정신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 실무교육시 구체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경찰수사관들은 피의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침해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수사환경과 수사관행의 개선화

수사환경이나 수사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재 우리 경찰의 현주소이다. 과거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사는 밀폐된 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통제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조사실의 환경을 외부에서는 볼 수 있으나 내부에서는 볼 수 없는 방으로 개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에서 알 수 있기에 문제의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 등의 문제로 일시에 이러한 것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조사실의 일부만이라도 개조하여 이를 시험실시한 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사시의 모든 피의자신문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의 조사실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밤샘수사나 휴식 없이 이어지는 수사 등 관행적으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루어지는 수사관행을 개선하여 일정 시간 수사 후 휴식시

간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밤샘수사 등은 구속영장 없는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의 신청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48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일찍 조사를 끝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만 우선 실시한 후 차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사의 원칙은 임의수사라는 것을 생각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경우 인권침해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확대화

수사시의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수사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지금의 불필요한 인권시비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사의 참여확대는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시비를 거의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변호사가 사법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변호인의 조력은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더욱 절실한 것이다.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진술의 의무가 없으며 또한 피의자신문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수인의무도 없으므로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에 속한다. 수사절차의 특성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판절차에서보다는 수사절차의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며 이에 대하여는 이미 경찰에서도 1999년부터 피의자신문시 변호사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공언하였다. 가능한 한 빨리 수사절차의 초기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확립되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도 검사의 작성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는 신속한 재판과 피의자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거를 획득·수집한다는 의미에서는 신체진실의 발견을, 그리고 피의자신문을 통하여 피의사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새로운 사실을 조사 평가함으로써 수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는 기능적인 형사사법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경찰수사상 인권보장의 전문성 강화방안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자는 고소인 참고인 증인 배상신청인이 되는 것 외에 형사 절차 형성의 주체로서 참여하거나 일반적으로 그 인격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보니 범죄자의 입건 및 체포 여부, 구속여부, 소추 혹은 석방 여부, 공판절차의 개시 여부 및 진행 상황 범죄자에 대한 형량의 정도 판결의 확정 여부 등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소추결정에 대하여도 한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형사공판에서의 역할도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절차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여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 인하여 형사사법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건된 범죄자 수보다 6배 이상 많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이 때문에 국민전반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의 범죄신고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재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지극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범죄수사에서 피해자가 홀대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수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찰이 범죄수사의 96% 이상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수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민의 신뢰확보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는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수사의 모습일 것이다.⁴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찰수사가 국민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경찰수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이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확보하는 우선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찰수사상 인권보장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체계 확립(수사인력의 간부화), 사법경찰관의 전문성 확보(수사경과제의 시행), 수사기법의 과학화, 특수수사기능의 강화 등⁴⁵⁾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체계 확립(수사인력의 간부화)

우리의 경찰실무에서 사법경찰관에 의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의 인원구성이 소수의 간부(사법경찰관)와 압도적 다수의 비간

44) 치안연구소, 『인권보장과 국민중심의 경찰수사』(2004), p. 5.

45) 위의 책, pp. 54-60.

부(사법경찰리)로 구성된 전형적인 에펠탑 구조인데다가 실무자들인 사법경찰이(그 중에서도 주로 경장, 경사)가 오랜 동안 현장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의자 신문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범죄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간부인 사법경찰관들이 경찰실무자들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사법경찰리가 모든 수사를 주관하고 사법경찰관의 도장만 빌려서 찍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찰수사에서는 사실상 사법경찰리가 주체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현실은 검사가 주재자가 되어 이루어지는 검찰수사와 비교되어 국민들의 불신 내지 낮은 신뢰를 받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선 수사현장에서 하위직 경찰관 주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한 청탁이나 압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은 결국 수사간부인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사간부의 양성과 직접적인 수사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수사간부 주도의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급히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에 대한 독립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2. 사법경찰관의 전문성 확보(수사경과제의 정착화)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여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내부의 인사·보직 등에 있어서 수사경찰과 일반 행정경찰을 엄격하게 분리·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경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자질·인성 검사를 거쳐 선발하는 한편 수사경찰이 된 후에도 전문화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동안 범죄는 점차 광역화·흉폭화·지능화 되는데 비해 일선 수사부서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위험 노출로 기피 부서가 된지 오래되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미 도입·실행되고 있는 수사경과제가 확고하게 정착되는 것만이 우수한 수사인력의 확보에 필수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감한 보수·임금·수당의 확대 지급,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수사관의 수사역량 강화, 근무여건의 개선과 승진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수사경찰관의 자부심 고취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 경찰수사의 체질 개선과 인권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수사는 항상 검사에 의한 검찰수사와 비교되기 마련이다. 지속적인 제

도개선과 충분한 지원을 통해 수사경찰관의 전문화와 간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은 경찰수사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혁신과제라고 생각한다.

3. 수사기법의 과학화

경찰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에 대하여는 아직도 주먹구구식이라는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 초동수사의 미흡, 현장보존의 실패, 현장감식의 미흡, 수사관의 주관적 직감이나 피해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등은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흔히 듣는 평가들이다. 특히 과학적 증거수집에 실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관의 주관적 직감이나 예단 그리고 피해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사방법은 자칫 강압수사나 피의자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쉽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큰 흐름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형사 소송절차는 법원의 공판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사실상 수사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다면, 특히 검찰에서의 자백이 있는 것은 법원이 공판중심의 법정심리절차를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현상이다. 공판중심의 법정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모든 증거(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포함)가 법정에서 현출·조사되고 평가되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다면 기존의 수사관행에도 큰 변화가 야기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는 더 이상 조서재판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자백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 조서에 기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자백 외에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 더 이상 피고인의 유죄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더구나 2007년부터 시행예정인 국민참여에 의한 재판제도(2007년에는 준배심제·준참심제, 2012년부터 완전한 배심제 또는 참심제)하에서는 철저한 구두변론주의·직접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에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가 탄핵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거의 인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도 사안에 따라 경찰수사와 검찰수사와 일원화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간의 이중수사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목전에 앞두고 경찰수사도 더 이상 피의자의 자백이나 수사관의 주관적인 감에 의존하는 수사행태는 버려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대신 철저하게 과학적 수사기법에 의존해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에 기초해 피의자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수사방법의 개발·적용이 절실히 요청된다.

4. 특수수사기능의 강화

검찰수사에 비해 경찰수사가 크게 뒤지는 분야가 바로 특수수사분야이다. 그 이유는 검찰이 정치인·고위관료·기업인들이 관련된 대형비리사건이나 대형경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면서 특수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집적해온 반면 경찰수사는 주로 민생침해사범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 스스로도 특수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성정하고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김홍수 법조비리사건, 제이유 그룹 로비사건, 바다이야기 게임·상품권 비리사건’ 등 대형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보듯이 부정부패를 척결함에 있어서는 직무관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 검찰이라는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부패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사정기관이 모두 동원되어 부패를 통제하는 즉 부패통제의 다원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부패통제에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김홍수 법조비리사건, 제이유 그룹 로비사건, 바다이야기 게임·상품권 비리사건’도 한 기관에서만 수사를 하였다면 혹 정치적 흥정이나 고려에 의해 축소되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경찰의 수사에 의해 거의 혐의가 밝혀진 상황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도 결국 끝까지 혐의를 밝혀 기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부패통제의 다원화는 사정기관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부패통제의 그물을 촘촘히 짜서 비리사범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투명사회의 정착을 앞당기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에 경찰도 특수수사기능을 강화하여 대형 비리와 부패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요청된다. 기존의 특수수사과 외에 범죄의 광역화·지능화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수사대의 설치로 그 기반은 다져졌다고 본다. 여기에 경찰의 장점이 뛰어난 정보수집능력을 이용한다면, 기존 사이버수사 외에 특수수사분야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처럼 국민들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부패척결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수사기관을 신뢰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본 보고서의 토론은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그에 따른 본 보고서의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된다.

첫째, 경찰수사와 인권과의 관계에서는 수사의 개념·목적·특성·대상, 인권의 개념·유형·발전과정·내용 및 분류·대한민국헌법상 기본적 인권보장에 관한 본질을 규명한 후 경찰업무와 인권, 경찰과 인권, 한국경찰과 인권, 경찰수사와 인권침해와의 관계를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둘째, 경찰수사과정상 인권침해의 실태와 문제점에서 인권침해의 실태는 ① 피의자

의 권리 불고지, ② 체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③ 영장없는 압수수색, ④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수사, ⑤ 총기 등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⑥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⑦ 고문, ⑧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⑨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⑩ 불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 미흡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문제점은 ① 체포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고지, ② 영장없는 체포, ③ 고문 등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④ 불공정한 수사과 미흡한 인권보호, 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⑥ 피의사실 유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향상방안에서 경찰청의 ‘인권경찰상’(人權警察像) 구현 추진방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①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②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1004 PROJECT), ③ 수요자 중심의 친인권적 고품격 수사 서비스 제공 등 크게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고찰하였고, 이에 토대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방안은 ① 범절차의 준법화, ② 인권교육의 철저화, ③ 수사환경과 수사관행의 개선화, ④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확대화 등 4가지 차원으로 제시되었고, 경찰수사상 인권보장의 전문성 강화방안은 ①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체계 확립(수사인력의 간부화), ② 사법경찰관의 전문성 확보(수사경과제의 시행), ③ 수사기법의 과학화, ④ 특수수사기능의 강화 등 4가지 차원으로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전개상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한 마디로,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은 경찰수사과정상 인권침해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경찰청의 ‘인권경찰상’(人權警察像) 구현 추진방안을 더욱 실효성있게 만들기 위해 서라도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방안과 전문성 강화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향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체계적·종합적·장기적 접근을 취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우리 경찰도 인권이 무시되거나 도외시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경찰이 인권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더라도 이제부터 우리 경찰은 인권침해문제들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꼬집어내어 자신감있게 밖으로 표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우리 경찰이 새롭게 선진민주경찰로 발돋움하는 잣대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보고서는 그 기대효과가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에 우리 경찰이 인권보호·인권보장을 철저히 지켜주는 선진민주인권경찰조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만이 그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법의 공정한 집행과 사회질서의 유지, 국민에게 만족한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임무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경찰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실제적 진실의 발견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보호·인권보장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인권보호·인권보장의 틀안에서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곧 경찰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경찰은 범죄수사조직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그 조직의 존립기반자로서 선진민주인권경찰의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경찰조직을 수사상 최선봉·최고봉의 인권수호조직이 되도록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이 확보될 수 있는 첩경을 여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끝>

[참고문헌]

- 경찰청, 『2006 경찰백서』, 2006.
- 고상준·김희은·이승미·장윤경·표창원, 『경찰인권교육방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경찰과 인권』, 2002.10.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결정례집자료」, <http://www.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3.5.30.
- 김경동·이운죽,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1986.
- 김광웅 외, 『사회과학방법론』, 서울: 박영사, 1983.
- 김재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위기개입전문가의 양성,” 한국경찰학회, 『경찰활동과 인권』, 제12회 정기학술세미나자료집, 2006.6.17.
- 박경식, 『경찰수사론』, 용인: 경찰대학, 1999.
- 이만갑·한완상·김경동,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한국학습교재사, 1982.
- 조현빈, “외근경찰의 적극적 인권보호,” 한국경찰학회, 『경찰활동과 인권』, 제12회 정기학술세미나자료집, 2006.
-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 연구보고서, 2006-01.
- Nigel Fielding, "The Organizational and Occupational Troubles of Community Police," *Policing and Society* 4, 1994, 4.
- Robert Reiner, *The Politics of The Police 2nd Ed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문화일보』
- 『세계일보』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책임연구보고서 2006-03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2006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